

# 근대 전환기의 기독교윤리의 한 유형으로서의 “혼인론” 연구\*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오지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근대전환기의 혼례와 혼인론: 충돌과 변용

1. 전통사회의 혼례와 혼인론
2. 전통과 충돌하는 새로운 혼례와 혼인론

## III. 근대전환기 기독교 문헌 속의 혼인론

1. 서학(가톨릭) 문헌으로 배우는 혼인론
2. 기독교 혼인론의 이식·수용·토착화: 『혼례서』, 『혼인론』, 『교인의 혼례론』을 중심으로

##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10>

\* 이 논문은 2020년 숭실대학교의 교내학술연구(토대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ABSTRACT •

---

A Study on ‘Marriage Theory’ as a Type of Christian Ethics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HK Prof., Oh, Jie-Seok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 the current view of marriage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arriage theory in traditional society and the Catholic/Protestant marriage theory in the related literature on “Christian Marriage Theory” owned by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search attempts to reveal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influence of foreign thought. In particular, missionaries who visited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considered that the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of Joseon was another mission. Therefore, they took a Puritan attitude from the view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ried to civilize Joseon by introducing a new life order and social principle. A good example that can trace its specific appearance and content is the writings of missionaries in Korea on the ‘Theory of Marriage.’ Those writings well expose the process of cultural border, hybridization, and inculturation in the Christian ‘marriage theory’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modern transition.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amining the appearance of the modern Korean landscape contained in the marriage theory and the transplantation, acceptance,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of foreign ideas.

**Key words:** Marriage Theory, Christian Ethics, Modern Transition Period,  
Christian Marriage, Marital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서양을 통해 기독교가 전래된 때부터 한국인의 윤리 패러다임에 영향을 준 것은 혼례와 상례와 제사와 관련된 통과의례들이었다.<sup>1)</sup> 전통사회는 관혼상제(四禮)를 중요시 하였는데 혼례와 혼인은 사례 가운데 근대전환기 한국교회가 새로운 세계관을 알아가고 구습에서 벗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 혼인과 관련이 있다.<sup>2)</sup>

서양 기독교 영향 받은 근대전환기 혼인론의 형성과정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서학서(西學書)와 근대전환기 개신교 문헌자료저작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밝혀보고 그 과정 속에 서양 기독교 혼인윤리의 이식, 수용, 토착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전환공간 속에서 교회가 전통 혼례풍속에 대한 단절과 교인들을 통제라는 방식으로 혼인윤리를 한국인 교인들에게 이식하고 수용하도록 한 모습<sup>3)</sup>과 그

- 
- 1)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송재용의 논문(송재용,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관·혼·상·제”, 『동아시아고대학』 30(2013))이 있다.
  - 2) 한규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10(1999); 옥성득, “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 『한국기독교와 역사』 16(2002);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이복규, “한국 개신교 일생의례의 특성과 세계관”, 『比較民俗學』 39(2009); 이숙진·양현혜,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32(2010); 이숙진,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박인덕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2014); 이상규, “교회는 중혼자(重婚者)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동서신학』 2(2019); 안수강, “그레고리(Daniel S. Gregory)의 『도덕학』(1915)에 나타난 부부윤리 분석”, 『실천신학』 71(2020); 안수강, “『장로회혼상례식서』(1924/1925)를 통해서 본 혼례문화와 현재적 함의”, 『갱신과부흥』 26(1)(2020); 오지석, “근대전환기의 기독교혼인윤리성립 성립과정 고찰-소안론과 배위량의 논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 3) 이숙진,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박인덕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349; 오지석, “근대전환기의 기독교 혼인윤리 성립과정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364.

속에서 문화접변, 혼종 그리고 토착화의 흔적을 통해 기독교 혼인론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II. 근대전환기의 혼례와 혼인론: 충돌과 변용

### 1. 전통사회의 혼례와 혼인론

전통사회는 혈연과 지연에 기반 한 공동체 문화를 가졌다. 혼인도 마찬가지였다. 혼인은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선 일이었다.<sup>4)</sup> 대개의 경우 남녀의 사회적·경제적 결합을 표현할 때 혼인·혼례·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sup>5)</sup>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sup>6)</sup>로 혼가(婚嫁), 혼구(婚媾), 혼취(婚娶)라고도 하며 비슷한 말로 가취(嫁娶), 결혼(結婚)로, 혼례를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결혼식)”, “혼인의 예절(근례贅禮, 빙례聘禮)”<sup>7)</sup>로, 결혼을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sup>8)</sup>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보면 혼인이나 결혼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행위가 중심이 되고, 혼례는 부부가 되는 행위에 수반되는 ‘예절’에 중점을 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혼례를 다시 말하면 남녀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공인하고 정당화하는 ‘의례’ 행위이다. 그러므로 혼인·혼례·결혼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영속적인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경제적 협력과 동거 관계를 수반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

4) 신형식, “발간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 2012, 4.

5) 박혜인, “제1장 혼인의 기능과 구분”, 위의 책, 10.

6)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8%BC%EC%9D%B8> 2022.7.14. 접속

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8%BC%EB%A1%80> 2022.7.14. 접속

8)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2%B0%ED%98%BC> 2022. 7.14 접속

므로 남녀의 단순한 성적 결합과는 명백하게 구별된다.<sup>9)</sup>

전통사회의 혼인은 남녀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의 형식이었다. 왜냐하면 집안·가문이 사회를 구성하는가장 기초 단위였기 때문이다.<sup>10)</sup>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혼인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았지만 여전히 불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유교적 사회 규범을 강력하게 보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유교적 사회규범이란 예법과 예속인데 예법이란 유교의 윤리이고, 예속은 유교의 의례생활 즉 ‘관혼상제(四禮)’의 습속인데 이는 『가례(家禮)』를 따른다.<sup>11)</sup> 조선후기에 접어들면 『가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서민들도 따르고 유교식 삼년상과 제사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혼례(婚禮)는 전통적인 인습이 강하게 유지되었고, 관례(冠禮)는 사대부 계층에서만 이어가고 있었다.<sup>12)</sup> 조선사회는 『가례』의 근거인 『예기(禮記)』의 혼례에 대한 정의(“혼례는 두 성(姓)의 좋은 점을 합쳐,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을 잇는 것이다”<sup>13)</sup>를 올바른 혼인론으로 수용하였다. 이 정의는 ‘이성지합 백복지원(二姓之合 百福之源, 두 성씨의 결합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sup>14)</sup> 즉 두 집안이 합친

9) 박혜인,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 11-12.

10) 위의 책, 13.

11) 이영춘, “예절로 다스리는 사회의 중범 질서”, 국사편찬위원회, 『유교적 사유와 삶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2009), 169.

12) 위의 책, 171.

“조선시대 교유의 전통 의식 중에서 혼례 의식만큼 유교화에 저항한 것은 없었다. 주자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근원적인 갈등은 고려시대와 새 왕조에서 오랫동안 만연한 부처제(婦處制) 관행이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신유학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이훈상 옮김, (서울: 너머북스, 2013), 334.

13) 이순구, “올바른 혼인”,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서울: 두산동아, 2005), 102.

14) 『예기(禮記)』 「혼의(婚儀)」편 “婚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박혜인,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 13.

다는 것과 또 그 위에 종묘를 받들고 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만일 이 두 가치가 같등할 때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물으면 이성지합이 먼저라고 답한다.<sup>15)</sup> 그렇다면 올바른 이성지합은 어떤 모습일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국가가 아무리 한쪽 집안, 즉 부계 쪽에서 사회를 주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 집안의 공조에 바탕을 둔 혼인을 원하였다.<sup>16)</sup>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한 혼인규범이나 금지 조항은 조선의 혼인론의 구체적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조선의 올바른 혼인<sup>18)</sup>에 관한 사항은 첫째 중매혼(가문과 가문의 결합), 둘째 동성혼(同姓婚) 금지, 셋째 상중(喪中) 혼인금지, 넷째 금혼령(禁婚令) 중 혼인금지, 다섯째 혼인사치금지, 여섯째 혼기준수<sup>19)</sup>, 일곱째 조강지처불하당(糟糠之妻不下堂), 여덟째 상처 후 3년 내 재혼금지, 아홉째 과부재가금지, 열째 신분내혼 등 10개로 정리할 수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는 유교화된 조선에서의 “혼인은 여성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유년기 여성이 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되는 어른으로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를 의미하였다.”<sup>20)</sup>고 정의한다.

15) 이순구, “올바른 혼인”, 102.

16) 위의 글, 109-110.

17) 위의 글, 109-110.

18) 이 부분은 이순구, 위의 글, 106-117에 나온 것을 정리한 것이다.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한국의 유교화 과정』, “6장 신유학의 입법화와 여성에게 일어난 결과”에는 조선시대 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처첩의 제도화, 혼인규정과 전락, 『주자가례』와 혼례식, 왕실의 혼례식, 조선의 혼례식, …, 혼인관계의 해소, 과부와 재혼 등)

19) 『주자가례』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남성은 16세에서 30세로, 여성은 14세에서 20세로 규정하고 있었고, 『경국대전』에서는 남성은 15세, 여성은 14세로 하한선만 명시해 놓았으며 13세가 지나야 혼담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만약 어느 한 쪽 부모가 지병이 있거나 50세가 넘게 되면 연령 제한은 12세로 낮아지기도 했다. 연령제한의 목적은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시키는 고려 유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329.

20) 위의 책, 332.

## 2. 전통과 충돌하는 새로운 혼례와 혼인론<sup>21)</sup>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한 뒤, 1882년 미국, 영국, 독일 등에게 차례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의 문물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개항을 기점으로 조선은 개화·개방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박영효(朴泳孝)는 일찍이 그의 개화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전통 사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관습과 생각들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의식을 지적한 바 있다.

무릇 남녀가 그 질투하는 마음은 같은데 남자는 유처취첩(有妻聚妾)하면서, 혹 그 아내를 속박하고, 또는 그 처를 쫓아내며, 아내는 그렇다고 개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니, 이것은 법에서 여자의 간음만을 금하고 남자의 난잡함을 금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또 남자는 상처(喪妻)하면 재취(再娶)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은 상부(喪夫)하면 아직 합근치 않았더라도 재가할 수 없으니, 이는 가족 친류(親類)가 제재하는 까닭이다.<sup>22)</sup>

확실히 조선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반려(伴侶)가 아니라 노예처럼 쾌락 또는 노동의 연장에서 인식되는 존재였고, 법률과 관습조차도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인격도 인정하지 않았다.<sup>23)</sup>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서양 종교와 새로운 사조가 유입되면서 전통사

2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면모 양상”, 『아시아문화연구』 28(2012), 김연수, “근대시기 혼례문화 변동 연구”, 『여성과 역사』 24(2016),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독일 선교사들의 보고에 나타난 침묵과 언어”,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2014), 송재용,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관·혼·상·제례의 지속과 변용”, 『동아시아고대학』 30(2013) 등이 있다.

22) 박영효, “개화상소”(1888), 『근대 한국 명논설집』, 『신동아』, 1966년 1월호 부록, 22~23. 신영숙, “자유연애·자유결혼, 그 이상과 현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서울: 두산동아, 2005), 210.에서 재인용.

23) 위의 글, 210.

회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한편 이때 유입된 외래 문물은 우리문화보다 더 문명개화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외래문화를 동경하면서 우리의 전통은 낡은 것,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여겨 새로운 사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나서게 되었다.<sup>24)</sup> 혼례·혼인에 대한 것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광수는 「혼인론-1의 속」<sup>25)</sup>에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의 일생이 걸린 중대사인 혼사를 술자리에서 결정하는 비밀비재했다고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였다.<sup>26)</sup> 이는 혼인을 개인이 아닌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가문과 가문으로 결합으로 본 전통사회의 혼인관이 아직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오개혁이후 전통 혼인관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류광렬(柳光烈)은 1933년 《삼천리》에서 “갑오(甲午) 이후로 조선에 자유주의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혼인에 대한 관념도 일변(一變)켜”<sup>27)</sup>라고 서술하였다. 근대전환기에는 혼례형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정의 부모 앞에서 행하는 이른바 개량 결혼식이 구식 혼례를 물리치고 조금씩 퍼져 나갔다.”<sup>28)</sup> 《별건곤》 1930년 5월호에서는 “가정의 부모 앞에서 행하는 재래식”의 혼례방식은 “어릿광대 놀음”<sup>29)</sup>같다고 평가하지만 문일평은 1935년 《신동아》 5월호에 게재한 글 「간편과 절약을 주안으로」에서 “사회 저명인의 주례 아래 행하는 신식 결혼”이 활기차고 그럴듯한 어떤 것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유행하게 되었다<sup>30)</sup>고 말한다.

24)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면모양상”, 152.

25) 이광수, 「혼인론-1의 속」, 《매일신보》 1917.11.23, 1.

26)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면모양상”, 152.

27) 柳光烈, 「結婚難의 打開策-理智의 判斷과 手腕역량에 依중」, 《삼천리》 5권 4호, 1933, 43. 위의 글, 152에서 재인용.

28) 신영숙, “신식 결혼식과 변화하는 결혼 양상”, 198.

29) 안복희 외, 「금춘 졸업의 모던 남녀의 결혼 이상」, 《별건곤》 1930.05, 21.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82.에서 재인용.

신식혼인(결혼)은 19세기 말 개신교(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기독교인 사이에는 신랑과 신부가 상대방의 머리를 꼭 지어 주고 상투를 틀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른바 ‘복수결혼(福手結婚)’이 성행하였다. 이때 복수란 쪽을 지어 주고 상투를 틀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sup>31)</sup> 복수결혼 형식은 일종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물을 떠놓고 한 이 결혼식은 신식 결혼식이지만 조선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던 빈자(貧者) 결혼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비용부담이 적어서 하층민에게 인기가 있었다.<sup>32)</sup> 1890년대 들어서면서 ‘예배당 결혼’이 시작되고 자리 잡게 되었다. 신식 혼례를 먼저 받아들인 지역은 개항지인 인천, 남포, 원산 등이었다. 근대전환기 신식 혼례는 가톨릭식(婚配聖事), 개신교식<sup>33)</sup>, 천도교식, 불교식(華婚法), 고천식(高天式)사회식 등으로 분화되었다.<sup>34)</sup> 기독교식은 기독교 전파와 교회당이 세워지면서 당시 중상류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선호되었다.<sup>35)</sup>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이 기독교식으로 결

30) 문일평, 「간편과 절약을 주안으로」, 《신동아》 1935.05, 84.

31) 고영진, “관혼상제 어떻게 변했나”,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1, (서울: 역사비평사, 1998), 274.

32) 신영숙, “신식 결혼식과 변화하는 결혼 양상”, 198.

33) 최초의 개신교식(예배당) 결혼식을 한 사람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1888년 3월 한용경과 과부 박씨로 기록하고 있는 이이화, 신영숙, 송현강 등이 있고, 〈별건곤〉 16·17호(1928년12월) 82쪽 기사를 전거로 1890년 2월 박시실녀(시실리아)와 강신성의 결혼을 신식 결혼의 처음으로 주장한다. 〈독립신문〉 1899년 7월 14일자 ‘서양혼례 관련 기사가 서양혼례를 다룬 첫 기사라고 하는 입장(<https://blog.daum.net/jidam55/16144914>)과 1920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나혜석과 김우영의 결혼식이 신문기사에 등장한 최초의 결혼식이라는 입장이 있다.

34) 김성은, “결혼과 이혼의 역사”, 이배용 외, 『우리나라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1999), 94.

“최근에 예수교의 혼례, 불식화혼(佛式花婚) 또는 조선식 개랑혼례는 물론 현미빵식 혼인 또는 임중(林中)결혼, 공중결혼 같은 첨단적 혼례식도 유행” 김동진, 「결·이혼으로 본 조선의 자태」, 《신동아》 1931년 11월호

35)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83.

혼하는 경우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인식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허위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수단”<sup>36)</sup>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교회·절·공공장소 등에서 한 신식 결혼은 통칭 ‘사회 결혼’으로도 불렸는데, 1920년대 초기가 되면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행하였다. 이에 예식장이란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결혼 절차도 반드시 신식·구식의 차원을 넘어 친구 혼례의 혼합이나 절충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신혼여행 과정까지는 신식 결혼 절차를 따랐지만 혼례 장소가 신부 집에서 예식장으로 바뀌었을 뿐 아직 전통적인 과정이 그대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즉 초행·신행 등의 전통 혼례 절차가 신식 혼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소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인 신식 혼례와 결합하여 변형·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III. 근대전환기 기독교 문헌 속의 혼인론

박보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례는 사회집단 내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족단위로 등장하는 통과의례이면서 집안과 집안 사이의 결합이 이뤄지는 집단의 입사의례이기도 하다.<sup>37)</sup>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혼례는 단순히 개인의 혼례를 머무르지 않고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새롭게 진입한 것을 축하하고 받아들이는 축제로서 의미로 확장된다.<sup>38)</sup> 이런 전통혼례는 기독교 혼인의례와 접합된 형태로 다른 의례와는 달리 특별한 거부감 없이 가장 빨리 정착되었다.<sup>39)</sup> 그렇다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갈등 없이 단순 수용하지 않았다. 혼례에서 예(禮)를 담아내

36) 「대개는 형식에 불과한 소위 신식 결혼식」, 《동아일보》 1925년 11월 17일.

37)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독일 선교사들의 보고에 나타난 침묵과 언어”,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2014), 194.

38) 위의 글, 194.

39) 위의 글, 194.

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sup>40)</sup> 또한 혼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고 서학에서 시작되어 가톨릭과 개신교의 혼인론은 한국인들의 혼인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흔적을 서학의 문헌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서학(가톨릭)문헌으로 배우는 혼인론

조선은 혼인과 부부됨의 출발을 효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효 중심의 입장은 서학(가톨릭)과 근대전환기 개신교가 조선에 전파되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특히 서학의 남녀관이나 혼인관은 유교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sup>41)</sup> 서학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차별 없는 천주의 소중한 피조물이라고 설파하였다.<sup>42)</sup> 이것은 당시 여성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양반층 부녀자에서 중하층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이끈 길잡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학의 윤리 특히 부부윤리를 알 수 있는 책은 뻘또하(Didace De Pantoja, 1571~1618, 龐迪我)의 『칠극(七克)』<sup>43)</sup>과 알폰소 바뇨니(Alfonso Vagnoni, 1566~1640, 王豐肅, 高一志)<sup>44)</sup>의 『제가서학(齊家西學)』이다. 그

40) 위의 글, 190.

“기독교 유입으로 종교의례 뿐 아니라 일생의례에 까지 전반적 의례혼합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데, 이를 대중전통과 엘리트전통의 경합으로 보고 몇몇 의례가 성공적으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이유를 대중전통의 힘에 의거하고 설명하고 있다.”(이런 입장은 윤영복, “한국 기독교 죽음의례의 변화양상”, 『종교문화비평』16(2009); 차은정,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 문화적 갈등”, 『한국기독교와 역사』10(1999), 방원일, “혼합현상을 이론화하기-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20(2001)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 193.

41) 오지석, “한국교회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12(2006), 79.

42) 위의 글.

43) 뻘또하(Didace De Pantoja: 龐迪我)는 『칠극(七克)』제6권 방음(坊淫)편 혼취정의(婚娶正議-결혼의 바른 뜻)에서 서학의 혼인관을 제시하고 있다.

44) 알폰소 바뇨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배주연, “해제, 제가서학(齊家西學)”, 동국역사문

리고 서학 윤리의 영향을 받은 책으로 『류한당언행실록』<sup>45)</sup>이 있으며,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칙을 모아 놓은 『회장규조(會長規條)』(1839)<sup>46)</sup>,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教諭示諸友書)』 혼배 편(1857)<sup>47)</sup>에서 가톨릭의 부부윤리를 소개하고 있다. 가톨릭의 선교사들은 서학서와 교서 등을 통해서 바른 혼인과 혼인의 순결함과 일부일처제의 정당성, 그리고 축첩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소개하고 이식하고자 하였다.

우선 『칠극(七克)』제6권 방음(坊淫)편 혼취정의(婚娶正議)에서 다루고 있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귀국의 혼례는 어떠한지요?” 내가 말했다. “우리 고장 모든 나라의 풍속은 모두 부부를 바른 법도로 여깁니다. 위로 국왕으로 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남편은 다만 한 아내를 배필로 얻어, 후사라도 감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뜨면 다시 처녀(正妻)와 혼인 하고, 첩을 들일 수는 없지요.<sup>48)</sup> 천주의 『성경』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참

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1, (서울: 경인문화사, 2020), 388-417을 참고하라.

- 45) 『류한당언행실록』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는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 있도록 “한국기독교 고전 세계화 시리즈 1”로 『이벽몽회록, 류한당언행실록, 사후목상』을 2007년 펴냈다. 『류한당언행실록』에 대한 연구로는 소재영, “자료 해제 - 류한당언행실록”, 숭실대학교 崇實語文硏究會, 『崇實語文』 1(1984) 220-223. 김신연, “류한당언행실록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6(1999) 5-23; 조연숙, “류한당언행실록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4(1)(2005) 365-396 등이 있다.
- 46) 김정숙의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에서는 1921년에 간행된 『회장직분』과 1913년에 간행된 『최강의 본분』과 별 차이가 없어서 『회장직분』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韓國思想史學』 20(2003) 40.
- 47) 『장주교윤시제우서』 혼배 편. 『장주교윤시제우서』는 1857년 8월 2일 반포된 조선 대목구 최초의 사목교서이다. 이 교서에는 성직자 생활 전반에 관한 지침과 서영회에 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었다.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 196.
- 48) 판토하 지음, 『칠극-마음을 다스리는 7가지 성찰』, 정민 옮김, (서울: 김영사, 2021), 510.

된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 개벽할 때에 천주께서 이미 만물을 조성하시고 나서 아담(亞當)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만드시고 이브(厄穢)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부니 두 사람이 한 몸이니라. 천주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sup>49)</sup>

천주께서 다만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배우자로 정해준 것은 부부가 바른 예법이 되는 분명한 증거고, 이것이 바로 천주께서 사람을 내신 끝은 도리입니다.<sup>50)</sup>

또 동아시아인들이 축첩을 효와 연결해서 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기독교 부부윤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가 말했다. “첩을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반드시 분명한 근거가 있을 테니, 그 뜻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sup>51)</sup> 내가 말했다. (생략) 모든 나라, 만고의 일체 성현의 교훈과 제왕의 법령은 그 굽은 것을 깎아 펴서 본래의 곧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훈과 법령은 반드시 천주께서 사람을 내신 원래의 법도에 맞아야만 훌륭하고 아름답지, 그렇지 않을 경우 추하고 악합니다.<sup>52)</sup> 옛 현인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한 번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두 번 건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두 번 건너는 것은 이상하다. 사람이 한 번 혼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두 번 혼인하면 몹시 이상하다.”<sup>53)</sup>

어떤 이가 말했다. “사람이 자식이 있는데 두 아내를 얻는다면 음란한 죄를 면치 못하겠지요. 만약 정처(正妻)에게 자식이 없어서 장차 제사가 끊어지는

49) 위의 책, 512.

50) 위의 책, 513.

51) 위의 책, 510.

52) 위의 책, 512.

53) 위의 책, 519.

불효를 염려해 후사를 구하고 다시 맞이하는 경우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듯싶습니다만…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다시 시집가지 않으면,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나라의 임금이 정문(旌門)을 세워주고, 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송합니다. 아내가 비록 자식이 없다 해도 남편이 다시 여자를 취해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또한 의로운 남편이라고 칭찬하겠지요.<sup>54)</sup> <중략> 정결한 덕을 지키려다 불효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찌 효를 구하기 위해서겠습니까? 다만 도덕의 힘이 정결함을 지키기에는 부족한지라, 효도의 명분을 흠쳐와 음란한 마음을 꾸미고, 불효의 죄를 빌려와서 욕망을 멋대로 채우는 죄를 사절하려는 것입니다.<sup>55)</sup> <중략> 사람이 자식이 없는 것이 어찌 반드시 모두 아내의 탓이겠습니까? 또한 남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성품은 남자보다 여려서, 아들을 얻어 돌보고 지키려는 바람이 남자보다 심합니다. 이제 남편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려 한다면 반드시 궤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마침내 다른 아내를 얻어온다면, 어째서 그것만 궤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인지요? 몸이 하나인데 몸이 둘인 것이 다 궤물인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sup>56)</sup>

옛날 어떤 현자가 이 때문에 한 사람에게 아내는 남겨두고 첩은 보내라고 권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치야 비록 바르지만, 첩을 내가 능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자가 말했다. “당신이 능히 첩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또한 천당에서 당신을 내보낼 것입니다.”<sup>57)</sup>

또한 관토휘하는 부부윤리와 결혼의 의미를 “부부를 맺는 것은 진실로 벗과 우정을 맺는 것보다 더 가깝다. 두 사람이 우정을 맺을 때 체모가

54) 위의 책, 520.

55) 위의 책, 521.

56) 위의 책, 522.

57) 위의 책, 523.

결맞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못한다. 하물며 부부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아내는 나란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대등한 몸임을 밝힌 것이다. ... 천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유익함을 얻고자 해서다.”<sup>58)</sup>라고 설명한다.

『칠극』이 일부일부제와 축첩을 대해 정결과 연결해 서술한다면, 이에 비해 바뇨니의 『제가서학』 “제부부(齊夫婦)”<sup>59)</sup>은 혼인론과 부부윤리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sup>60)</sup> 기독교적 일부일처의 당위는 태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신앙의 문제에 그 유일한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근대전환기 축첩제도 폐지와 기독교적 일부일처제가 구축된 상황과는 다르다. 배주연은 『제가서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서간의 일치된 혼인관은 ‘세대를 이어가는 주요한 과업’이며 음양(陰陽)의 상보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결혼 제도로 조혼제, 일부다처제, 축첩제, 점성술에 의존하는 혼인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바뇨니가 축첩제를 비판하는 데 그 배경은 가정의 화합, 자녀교육, 경제 등이다. 축첩제에 대한 비판은 동아시아 전통과 서학의 윤리 사이의 간극이라 볼 수 있다.<sup>61)</sup> 또한 부부 역할에 대한 바뇨니의 생각은 중국의 전통

58) 위의 책, 51~517.

59) 바뇨니의 『제가서학』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제부부인데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배우자의 결정(定偶), 제2장 부인 선택(擇婦), 제3장 역할 설정(正職), 제4장 화목(和睦), 제5장 부부의 화합(全和), 제6장 남편에 대한 잠언(夫箴), 제7장 부인에 대한 잠언(婦箴), 제8장 부부해로(偕老), 제9장 재혼(再婚). 『제가서학』 또는 『서학제가』과 관련된 연구는 박지현, “알폰소 바뇨니(高一志)의 『서학제가』(西學齊家) 「제부부」(齊夫婦)권-선교의 한 방식으로서의 부부윤리”, 『인문논총』 67(2012), 김귀성, “P.A. Vagnoni의 제가서학 구조와 부부윤리”, 『교육사상연구』 27-2(2013) 등이 있다.

60) 박지현은 바뇨니의 혼인론을 바뇨니가 활동했던 유럽의 가톨릭 교회 담론과 마찬가지로 신성성과 세속성의 두 가지 모순된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지적한다. 박지현, “알폰소 바뇨니(高一志)의 『서학제가』(서학제가) 「제부부」(제부부)권-선교의 한 방식으로서의 부부윤리”, 『인문논총』 67(2012), 545.

61) 배주연, “해제, 제가서학(齊家西學)”, 동국역사문화연구소편, 『조선시대 서학관련 자료

적 음양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과 밖의 공간으로 정하여 제 역할이 정해진 부부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주객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sup>62)</sup>

판토히와 바노니가 전한 서학의 혼인론은 한국천주교인들에게 이식되고 변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sup>63)</sup>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서학의 부부윤리는 혼인에 있어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하고 ‘축첩제’, ‘과부개가금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었다.<sup>64)</sup> 이러한 입장은 1890년대 동학 지도자들의 축첩제 반대와 과부의 재혼권의 호소와 이후 전래된 기독교(프로테스탄트)의 부부윤리와 동질적인 것으로, 근대전환기 동안에 남녀 그리고 부부의 동등한 권리, 또 축첩을 폐지하고 조혼 금지를 고종에게 청원한 박영효와 같은 계몽 인사들의 담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sup>65)</sup>

집성 및 번역·해제 1』, (서울: 경인문화사, 2021), 414~415.

박지현은 “결혼을 바라보는 바노니의 관점과 중국 전통 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노니의 경우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는 그 어떤 존재 혹은 가치를 위해 결혼이 복무되거나 극복되어야 한다는 도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전통 담론은 결혼 그 자체가 도의 실현이 일어나는 자연적 현장의 하나라는 목적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라며 서학의 부부윤리와 중국 전통의 부부윤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박지현, “알폰소 바노니(高一志)의 『서학제가』(서학제가) 「제부부」(제부부)권-선교의 한 방식으로서의 부부윤리-”, 『인문논총』 67(2012), 543.

62) 배주연, “해제, 제가서학(齊家西學)”, 416.

63) 이런 유형으로 『유한당언행실록』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18세기 서학윤리 그 가운데 부부윤리를 수용하고 변용한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4) 오지석, “한국교회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80.

65)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한국교회사학연구원, 『教會史學』, 1-1 (2001), 142 참고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80.

## 2. 기독교 혼인론의 이식·수용·토착화: 『혼례서』, 『혼인론』, 『교인의 혼례론』을 중심으로

재한 선교부는 조혼과 축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조혼 풍속은 조선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파악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조혼은 성적으로 미숙한 결합으로 허약한 아이가 출산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조혼은 학교공부를 방해한다. 셋째, 조혼은 결혼 후 불화의 원인이 된다. 넷째, 조혼은 축첩과 매춘 같은 음란한 풍속을 조장한다.<sup>66)</sup> 이런 입장은 1899년(광무3년)에 발행된 〈대한그리스도인회보〉 “엠틀 청년회 혼인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당시 혼인의 폐단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찍 혼인(조혼)하는 것이고, 둘째 폐단은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거간을 통해 혼인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혼인이란 두 사람이 백년 고락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백년 고락을 함께 하려면 첫째 두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합하여야 하며, 둘째 학문과 지식이 같아야 하고 셋째 외양과 처지가 대강 같아야 한다고 결혼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당시 혼인의 폐단을 구할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남녀가 분별이 없어 동등 권리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둘째, 남녀간에 같은 학문으로 한 학교에서 공부하여 할 것, 셋째, 부모가 압제하여 혼인을 정하지 말 것, 넷째, 혼인 연령을 정할 것 등이다.<sup>67)</sup> 이와 같은 언급은 선교사들이 이식하고자 한 서양의 부부윤리 및 혼인관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한 선교부는 한국 교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일찍 결혼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찍 결혼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축첩제도는 남

66) 오지석, “한국교회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85.

67) “엠틀 청년회, 혼인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광무3년(1899년) 제3권 제16호. 차옥승 편, 『기독교사 자료집 권1-타종교 및 전통문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서울: 고려한림원, 1993), 51~52 재인용.

편 쪽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였다. 성서는 축첩제도가 없는 일부일처제를 부부관계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8)</sup>

근대전환기 기독교 부부윤리 혹은 혼인론은 선교사들의 이식, 한국교인들의 수용, 한국교회의 확장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학월보>, 마펫(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의 『혼례서』, 한승곤의 『혼인론』(1914), 로스(Cyril Ross, 1868~1963, 한국명 盧世永)의 『교인의 혼례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감리회의 <신학월보><sup>69)</sup>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근대전환기 기독교의 혼인론 또는 부부윤리의 이식과 수용의 모습을 발견해보자.

1900년 12월 <신학월보> 1권 1호 “년환회덕행규칙”에서는 덕행개정조목(남녀 혼인하는 것, 부부 헤어지는 일에 대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부부도: 제일 입교하기 전 대한법으로 혼인을 지낸 자는 자기가 자원하지 아니하면 교중례로 다시 지낼 것 없음. 제이 세례 받은 후에 혼인을 정한 자는 불가불 강례대로 교중법을 좇아 행함. 제삼 너무 어려서 혼인하는 일을 우리 힘대로 금하되 우리 생각에는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 전에는 혼인치 아니함이 마땅함. 제사 우리가 결단코 교인이 외인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 제오 부부간 서로 헤어질 연고는 간음한 일뿐이니 부부 중에 누구든지

68) Baird, W. M.,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3(July-September, 1896): 194~198, 229~239, 256~266 백종구, 앞의 글, 141에서 재인용

69) <신학월보>는 1900년 12월 창간되어 신학을 주제로 한 한글로 된 기독교 학술잡지로 1910년까지 발행되었다. 미감리회에서 창간하였으며 존스(G.H. Jones, 한국명 趙元時)가 편집을 맡았고, 성장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장에서 한국인들 스스로 그 진리를 탐구하고 원리들을 숙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주요한 신학적 주제 등을 그들이 검토하고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회 언론지로서 기능을 하였다. 자세한 자료해제는 조선혜, “자료해제, 한국 최초의 신학잡지 <신학월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연구회 엮음, 『<신학월보> 색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5~6.이 있다.

간음하다가 서로 헤어진 자는 그 둘 중에 간임죄 있는 자면 무죄한 자 사는 동안 다시 교중례로 혼인치 못하고 그러나 무죄한 자는 법대로 서로 헤어진 후에 교중례로 혼인을 허락함.<sup>70)</sup>

〈신학월보〉 1권 11호(1901.10)의 사설에서는 “첩언는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축첩제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자가 남편을 여러 두는 것을 금하듯 남자가 첩을 얻는 것 또한 금해야 한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첩을 둔다고 하였는데 아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탄생될 수 있는 것이며 아들 낳지 못하는 데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들을 원함은 조상봉사 때문인데 첩의 자식의 제사를 받는 것은 조상도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화목한 부부의 사랑을 언급함.<sup>71)</sup>

〈신학월보〉 2권 3호(1902.03)의 교보 “리천읍(이천읍) 김제안씨의 첩 버린 일”(구춘경)의 기사는 “이천읍군 돌속장 김제안이 전도하여 돈이동, 소꼬지 두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열심 전도함. 김제안의 혈육이 없어 첩을 두었으나, 월보를 보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첩을 내보냄<sup>72)</sup>을 다루고 있어 기독교 부부윤리가 한국 교인들에게 이식되어 수용한 내용이다.

〈신학월보〉 3권 7호(1903.07) 논설 “내외하는 풍속”(문경호)은 기독교의 혼인론이 수용·확산된 내용이다.

대한의 여인들은 내외법에 묶여 집안에 갇힌 채 남편에게 종속되어 노예와

70) “년환회덕행규칙”, 〈신학월보〉 1-1(1900.12), 26~2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연구회 엮음, 『〈신학월보〉 색인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12.

7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연구회 엮음, 『〈신학월보〉 색인 자료집』, 46~47.

72) 위의 자료, 57.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교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유권을 주어 마음대로 다니게 할 것이며 옳은 일은 서로 협력하여 행하되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를 힘쓸 것.<sup>73)</sup>

〈신학월보〉 4권 11호(1904.11) 사설 “민지 앓는 자와 혼인하지 말일”은 “혼인할 때는 상대 집안의 부가 아니라 ① 상대 집안과 신랑의 믿음, ② 상대 집안의 인애, ③ 신랑될 자의 부지런 함을 보고 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기독교의 부부윤리의 한 가지인 교외인과의 혼인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장로회 마뻬트(馬布三悅)의 『혼례서』를 살펴보면서 장로회 혼인론과 부부윤리의 이식과정의 특징을 발견해보자.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인 『혼례서』는 혼인예식을 다루고 있는 예식서이다. 저자는 마뻬트이고 필사본이며 한글로 되어 있으며 15면(27.5×25.0)이다. 하지만 저술연도와 발행사항을 알 수 없다.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혼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어 정혼을 하기 전에 경계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제1은 혼인연령, 제2는 혼례를 치를 때 과거의 풍속을 좇지 말 것, 제3은 축첩금지, 제4는 근친혼 금지, 제5는 이혼금지, 제6은 혼인에 관한 국법준수, 제7은 주일 혼인 금지: 목사·장로·조사 등을 주례로 청할 것; 혼례를 행할 때 신랑은 좌편에, 신부는 우편에 서서 혼례를 행할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의 권면과 기도문, 혼인서약, 성혼선언, 기도문, 찬성시, 성구(창세기 2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서 5장, 고린도전서 7장) 등을 부기되어 있다.<sup>74)</sup>

『혼례서』는 ‘예수교회혼례라’리는 말로 시작하며 기독교의 혼인법과 혼인론을 서술한다.<sup>75)</sup>

73) 위의 자료, 116.

74) 오지석, “해제-혼례서”,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 해제』, (서울: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236~237.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실 때에 남녀를 지어서 부처(夫妻)를 되게 하셨으니 혼인하는 법을 세워났니라 또한 계명 주실 때에 간음을 금하고 남의 처를 탐내지 마라하셨고 예수께서도 말씀 하시기를 사람내신 이가 처음부터 한 사나이와 한 여인을 만드시고 또 이르시되 이런 고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매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느니라 또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음란을 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을 행함이오, 버린 여인에게 장가 드는 자도 또한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런고로 혼인하는 법은 인류에 큰일이니 소홀히 못할 것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것이오<sup>76)</sup>

또한 박보영이 주목하고 있듯이 기독교 전래이후 근대전환기 혼례 변화의 특징은 ‘침묵과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의례는 근대화의 논리, 기독교의 영향, 그리고 식민지 정책이라는 세 가지 중첩된 압박 속에서 ‘근대적’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기독교 양식의 혼례는 교회 언어로 혼인동의를 담고 있는데 이는 서양의 역사성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 전통 혼례에서 고수하는 ‘침묵’과 상충되는 것이다.<sup>77)</sup> 『혼례서』에는 ‘목사가 할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회언어로 혼인동의를 구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목사가 할 말씀이라

대개 사람의 혼인을 믿는 것이 귀중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옛적에 에덴동산에서 허락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좇아 힘을 행할 것이오, 사람의 뜻으로 가뵈야 못할 것이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경계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부부의 직분을 다하고 혼인하는 작정을 이루게 할지어다.<sup>78)</sup>

75) 『혼례서』를 현대어로 고쳐 표기하기로 한다.

76) 마켓, 『혼례서』, 1~2.

77)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 189.

78) 마켓, 『혼례서』, 8.

**목사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말씀**

신랑아 네가 이 여인에게 장가들어 아내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생전에 길이 화평한 마음으로 살겠느냐

신랑이 대답하되 그리하겠삽나이다. 혹 예<sup>79)</sup>

**목사가 또 묻는 말씀**

네가 하나님과 여러 증거하는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생전에 길이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위로하기로 작정하고 좋던지 그르던지 강하던지 약하던지 도무지 버리지 말고 또 신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 마음을 두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느냐

신랑이 대답하기를 그리하겠삽나이다. 혹 예<sup>80)</sup>

**목사가 신부에게 요구하는 말씀**

신부야 네가 이 사람에게 시집가서 남편 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생전에 길이 화평한 마음으로 같이 살겠느냐

신부가 대답하되 그리하겠삽나이다. 혹 예<sup>81)</sup>

**목사가 또 묻는 말씀**

네가 하나님과 여러 증거한 사람 앞에서 이 남편을 생전에 길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이 족중하며 위로하기를 작정하고 가난하던지 부자되던지 강하던지 약하던지 도무지 버리지 말고 또 신랑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마음을 두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느냐

신부가 대답하기를 그리하기로 응낙하나이다. 혹 예<sup>82)</sup>

마렛의 『혼례서』는 21세기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혼례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기독교 혼인론과 부부윤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

79) 위의 책, 9.

80) 위의 책, 10.

81) 위의 책, 11.

82) 위의 책, 11~12.

마렛의 『혼례서』가 기독교 혼례 또는 혼인론을 이식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한승곤(韓承坤)<sup>83)</sup>의 『혼인론』<sup>84)</sup>은 이식된 사상을 수용하고 적용·확산한 예로 볼 수 있다.

『혼인론』은 근대전환기 혼인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에서 조선 결혼 관습을 비판하며 정리한 일종의 계몽서이자 전도문서이다. 이 책은 저자 한승곤 목사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시무하던 시기에 저술한 것으로 저자의 종교관 및 근대이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국의 풍속과 습관을 개량해야 하는데 특히 인륜의 중요한 부분인 혼인에 관한 풍속과 습관의 개량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혼인을 제대로 해야 좋은 부부도 많아지고 가정의 복락이 생기고 올바른 자녀교육을 통해 교회와 사회,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많이 배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당대 혼인의 폐해, 즉 조혼, 이혼과 중혼, 축첩, 간통, 매매혼 등의 폐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있고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잘못된 혼인생활로 인해 출교 당하는 일이 빈번했던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혼인과 관련한 폐해는 단순히 가정과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교계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승곤은 서문 말미에 “내가 우리나라 동

83) 한승곤(韓承坤, 1881~1947)은 평양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숭실중학교와 평양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후 3년간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다. 1913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지의 한인교회에서 시무하는 한편 1919년부터는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조직한 흥사단 본부의 의사장을 맡아 활약하며 구미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1936년 6월 귀국한 뒤에는 국내에서 수양동우회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체포되어 1940년 8월경성복심법원 3년간 옥고를 치른바 있는 기독교 민족주의자이다.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84) 한승곤 편, 『혼인론』, 평양 광명서관, 예수교서원, 1904.1.10., 18면, 크기 18.0×12.8. 띄어쓰기 되어있지 않은 세로쓰기 한글.

한승곤의 『혼인론』 관련된 자료 소개 또는 연구는 오지석, “해제- 혼인론”, 237~238. 『일제강점기 크리스찬의 결혼생활 지침서<혼인론>』, 『승대시보』1134호, 2015년 2월 9일자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9> 2022.07.14. 15:35 접속. 박해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혼인론』(1914)과 『교인의 혼례론』(1922)”,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1(2019). 등이 있다.

포와 교유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제 의견을 붙여 혼인론이라 하는 책을 한 권 편집하였사오니 구하여 보시고 성경 뜻과 참 이치에 합하는 것을 지키고 제 의견으로 말한 중에도 합당한 것은 채용하시어 가정과 교회에 좋은 복락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sup>85)</sup>라고 『혼인론』의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혼인론』은 기독교인의 자세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참 이치를 깨달아 전통사회의 혼인의 악습을 타파하고 옳은 이치를 좇을 것을 강조하며 그 올바르게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1장 ‘믿는 사람과 혼인할 것’, 제2장 ‘나이 장성한 후에 혼인할 것’, 제3장 ‘혼인할 때 돈을 주고 받지 말 것’, 제4장 ‘부모가 자식의 혼인을 인도하는 것이 좋으나 자식의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 것’, 제5장 ‘과부와 홀아비가 다시 장가가고 시집갈 때 혼례를 신중히 할 것’ 등 총 다섯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1장 ‘믿는 사람과 혼인할 것’에서 혼인의 제1원칙으로 내세운 교인간의 혼인, 불신자와의 혼인 금지이다. 본문 14면 가운데 절반인 7면을 할애한 것에서 그것이 당대의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불신자와 혼인 금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둘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둘 다 믿음을 잃기 쉽기 때문이라 하였다. 셋째,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면 집안이 항상 불화하여 패망하기 쉽기 때문이라 하였다. 넷째,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면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2장 ‘나이 장성한 후에 혼인할 것’에서는 조혼 풍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비판하였다. 첫째, 조혼은 성경 말씀에 어그러지는

85) 한승곤, 『혼인론』, 평양 광명서관, 1904, 서문 3~4. 현대어역은 박혜미의 해제에 나온 번역을 따른다.

반기독교적인 풍속이라고 하였다. 7~10세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것은 혼인에 대한 귀중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괴악한 혼인 풍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고린도전서 7장 36절, 마태복음 10장 9절, 히브리서 13장 4절을 근거로 육체와 정신이 장성한 후에야 혼인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둘째, 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조혼한 까닭에 이러한 최악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고 탄식하며, ‘간음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예수의 교훈에 따라 혼인은 장성한 후에 합당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조혼은 신랑 신부의 몸과 영혼에게도 큰 해가 된다고 하였다. 장성하기 전 부부가 되면 육체와 정신이 쇠약하여질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넷째, 장성하기 전에 낳은 자식은 육체가 약하고 불완전하기 쉽기 때문에 자손에게 큰 화가 된다고 경고하였다. 문명한 서양 각국의 인종이 장대하고 기골이 충실한 것은 장성한 후에 혼인을 하기 때문이고, 조선의 인종이 미약한 것은 혼인을 너무 일찍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인들은 장로교 총회 에서 결정한 혼인 연령, 즉 남자 만17세와 여자 만 16세를 지켜 혼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3장 ‘혼인할 때 돈을 주고 받지 말 것’에서는 매매혼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였다. 혼인은 두 사람이 서로 원하고 의지하여 백년해로 하려는 일인데 종이나 짐승을 사고 파는 것처럼 돈을 주고 혼인하는 것은 이치에 크게 합당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제4장 ‘부모가 자식의 혼인을 인도하는 것이 좋으나 자식의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 것’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혼인을 지나치게 강제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경계하며 지혜롭게 자녀의 혼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과부와 홀아비가 재혼을 할 때에 혼례를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따라, 과부와 홀아비의 재혼은 성경 이치에 합당한 좋은 일이긴 하나, 조선에서는 과부와 홀아비가 혼인할 때 예도 갖추지 않고 그저 함께 모여 사는 것을 풍속으로 삼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신자와 결혼 불가, 조혼 및 매매혼 금지 등 저자가 제시한 혼인담론은 1900년대 혼인 문제에 대한 한국 장로교회의 입장과 일치한다. 즉,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에서 “교인혼인을 如何케 할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이래 혼인 문제를 둘러싼 고민을 계속하였고, 1904년 마침내 ‘불합당하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당회가 세례를 주지 않을 것’, ‘음행이외의 이유로 이혼하면 당회는 그 사람에게 벌을 줄 것’,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로 정함’ 등과 같은 대략적인 혼인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1906년 12월에는 경상남도 지역의 영수·집사·조사·전도인 등이 모인 제직회에서 혼인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정했는데, 그 내용 역시 본 자료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sup>86)</sup> 1914년 총회에서 새로운 원칙을 더 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원칙을 세워 조혼의 폐해를 막고자 하였다.

『혼인론』은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전통사회의 풍속과 문화적 갈등이 현존하는 가운데 이제 자리 잡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부부윤리에 확실한

86) 제직회에서 결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은 안 믿는 자와 결혼 못할 일이고, ②는 남녀성혼을 나이 차기 전에 미리 정혼하여 두는 풍속을 폐할 일이고, ③은 혼사를 부모가 주장하나 자식의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못할 일이고, ④는 처녀 16세 남자 18세에 성혼하는 것을 금치는 아니하나 2~3세 더 기다려 하는 것을 교회서 아님답다 할 일이고, ⑤는 세례 받는 처녀가 세례 안 받은 남자와 결혼치 못할 일이고, ⑥은 선금돈을 금할 일이고, ⑦은 결혼소를 한본으로 두 장을 쓰고 주혼자와 증인의 성명·도장을 박아 피차 나누어 가질 일이고, ⑧은 환과 혼인도 총각·처녀 혼인과 일체로 할 일이고...(이하 생략) 한규무,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 75;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 자료해제』, 2007, 238

지침을 내리고자 한 당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고민을 잘 드러내준다.

위에서 살펴본 장로회의 『혼례서』와 『혼인론』이 기독교 혼인론과 부부윤리의 이식과 적용·확산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로스<sup>87)</sup>의 『교인의 혼례론(Christian Marriage)』<sup>88)</sup>은 조선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전통신회와 기독교인들의 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을 비판하고 기독교 윤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외래사상의 반성적 확산의 양태라 하겠다.

『교인의 혼례론(Christian Marriage)』은 저자 로스가 조선 20년 넘게 거주하면서 특히 선천 중심으로 평북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인용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우선 일반적인 혼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기독교의 혼인론을 관련된 성구를 근거로 정의를 내린 후, 온전한 혼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혼인은 누구 앞에 할 것인가?’, ‘혼인을 누구 위하여 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논하는 방식으로 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으로 인해 ‘교회와 온 백성에게 해됨이’ 많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혼인은 간단히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생활하기로 맹세한 것이다”고 정의한다. 그 다음에

87) 로스(Cyril Ross, 한국명 盧世永, 1868~1963)는 미북장로회 의료 선교사이다. 1897년 미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의료선교사 어빈과 활동하다가 1902년 11월 평북 선천으로 이주 그 다음해 평북 선천 선교지부로 부임하였다. 그는 선천남자성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성학교 설립에 참여하였고, 1912년 장로회 총회 조직 때 초대 평북노회장에 취임하여 평북 지역 선교에 공헌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성서개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937년 4월 선교사직 사임하고 귀국 하였고, 1963년 2월 캘리포니아주 그렌데일에서 별세하였다.

88) 노세영(Rev. Cyril Ross), 『교인의 혼례론』, 조선예수교서회, 1922. 『교인의 혼례론』은 1922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혼인 교리서로, 분량 총 24면, 크기 16.9×10.1, 띄어쓰기 된 세로읽기의 한글 문서이다.

『교인의 혼례론』의 연구 및 소개로는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혼인론』(1914)과 『교인의 혼례론』(1922)”,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1(2019)이 있다.

성서적 의미에서 혼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혼인은 정결한 것이다(창 2:18~25; 엡 5:22~33). 둘째, 혼인은 귀한 것(히 13:4)이다. 간음과 음행을 멀리하라. 셋째, 혼인은 사랑으로 하는 것(엡 5:25~33)이다. 남녀동등과 일부일처에 대한 강조하고 있다. 넷째, 넷째로, 혼인은 복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잠 18:22, 31:10~31, 행 18:2, 3, 16, 롬 16:3절의 성구를 인용하였다. 다섯째, 혼인한 후에는 이혼을 어렵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마19:6~7, 5:31~32, 롬 7:2~3) 저자는 한국에서 20년간 지내는 동안 경험한 바, 남편이 失行한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많이 보았으나 아내가 실수한 남편을 버리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여인이 범한즉 죄라 하되 남자가 범하면 실수라고만’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여기서는 저자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박혜미는 로스의 이런 혼인관에 대해 “저자는 성경에 근거하여 혼인을 정의하는 한편, 전근대적인 풍토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나아가 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이며, 성서가 가리키는 조건 하에 아내 역시 남편을 떠날 자유를 가졌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서술은 1920년대 한국기독교교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아내에게도 이혼청구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민법(1923년 개정)보다 앞서 제기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89)</sup>”고 평가하고 있다.<sup>90)</sup>

89)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계는 혼인윤리 영역에서 자유연애와 이혼의 증가라는 새로운 도전에 처하게 되었다. 기독교신보 등을 필두로 한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이혼 증가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높은 이혼의 원인을 조혼과 자유연애에서 찾았다. 또한 ‘그리스도 신자들은 가정의 헌법인 사랑을 철저히 지키어 비록 이상에 맞지 않더라도 무너져가는 가정 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의 절대 금지와 같은 보수적인 담론을 확대해 나갔다. 이숙진,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조혼,

한편 ‘기독교인의 온전한 혼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답이 7면에서 24면까지 이어진다. 이 부분이 로스의 『교인의 혼례론』의 토착화 특성이 잘 드러난다. ‘기독교인은 온전한 혼인을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에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혼인은 누구 앞에서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첫째, 하나님 앞에 할 것이며 혼인은 성례(聖禮)라고 답한다. 둘째, 사람 앞에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밀한 예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피차 신랑 신부 앞에서 약조하는 것인데 이 약조는 거룩한 약조이다’라고 답한다. 두 번째 ‘혼인은 누구 위하여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첫째 물음보다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서술한다.

(1) 누구 위하여 하지 아니할 것인가? ① 조부모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한다. ②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다. ③ 친척을 위함도 아니다. ④ 이웃을 위함도 아니다. ⑤ 중매를 위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여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장래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 강도 높게 비난한다. 그렇다면 (2) 혼인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① 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며(마 6:33) ② 신랑 신부 스스로를 위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특히 혼인의 당사자인 신랑 신부가 각각 서로를 알지 못하고 혼인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남자가 알지 못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12~19)와,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20~24)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남자가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장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 일인지 잠깐 생각하고자 한다. (중략) 본 문제를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합당하냐. 곧 다시 말하면 성명과 주소와 나이까지 알지 못하고 중매가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52~53.

90)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혼인론』(1914)과 『교인의 혼례론』(1922)”, 235~236.

에게 가르침을 받아 혼인하는 것이 합당하나 함이라 또 누가 말하기를 서로 사진만 보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니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중략) 어찌 하여 이같이 되었는데 하니 첫째 까닭은 풍속이 되어온 연고요 둘째 까닭은 어린 아이라 아내 택할 줄 알지 못함이요. 셋째 까닭은 아내를 대표로 택하는 부모가 있는 까닭이니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할만하며 이 같은 풍속을 어떻게 고쳐야 좋은지 또한 언제 고쳐야 좋은지 잘 고칠만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외다. 혼인하기 전에 신부될 사람의 몇 가지 알 것이 있으니 첫째는 신부될 사람이 교인인지 또 교인이라도 참 교인인지 알아 볼 것이며 또 집안과 부모가 다 잘 믿는지 먼저 알 것이며 둘째는 건강한 힘이 있는지 병신인지 알 것이니 병신이면 장가나 시집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병신이라도 갈 마음 있으면 먼저 그 형편을 알아야 될 것이며 셋째는 학식을 알 것이니 신부될 사람이 집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의복과 음식이며 모든 일을 잘하는 것과 시부모 없어도 잘할는지 잘 알아 볼 것이며, (중략) 넷째는 성품을 알아야 할 것이니 신부될 사람의 성품이 자기의 성품과 합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즉 사진보고 성품을 알 수 없으니 중매가의 말로는 알기 어려우니 이 부부는 4-50년간 안락 가운데서 생활하려면 성품이 합하여야 할 터인 즉 아 과연 중매하는 이들이여 이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살 것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 아마 깊이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외다. (중략) 들으니 평양 길(선주) 목사가 자기 아들을 장가보내기 전에 처녀의 부모와 같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묻기도 하며 기도하며 의론한 후 결혼하였다 합디다. 그런 즉 이런 일이 어떻게 잘될 방법은 조선에 직분 있는 이들이 먼저 기도 많이 하는 중에 믿는 부모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 깊이 생각하면 무슨 좋은 풍속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풍속으로 인하여 교회와 온 백성에게 해 됨은 많이 깨닫는 가운데 고칠 방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고로 20년간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니 요사이 일이 많이 보이는 데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런고로 교회 가운데 풍속을 세우려고 하는 중 새 풍속이므로 고칠 것이 아니라 안 된 풍속을 알고 고칠 것이라 술 마시는 사람이 새 술은 묵은 술만 못하다 하는 것 같이(눅 5:39)

이전 풍속이 새 풍속보다 좋다함도 있는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닌즉 한 가지 또 어려운 것은 풍속을 개량하는 중에 혹 어떤 이가 실수하기 쉬운 줄 알지 못함이 아니나 전 풍속대도 하면 실수가 더 많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신 차리면 두 가지 풍속 중에 유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sup>91)</sup>

2.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합당한지의 문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여자는 주장하지 않는 까닭으로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까닭에 (고전 11: 3) 여자가 주장하기는 좀 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시집을 잘 가는 못하면 총각의 장가 잘 가지 못함보다 더 어렵지요. 기자가 여러 신랑에게 혼례하는 날 묻기를 오늘 처음으로 신부를 보는가 하니 다 처음 본다 고 하오. 그와 같이 신부들도 신랑을 처음 볼지니 이같이 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형편이 많으므로 그 가정은 장차 위태하기 쉬우니 그러므로 처녀가 시집가기 전 신랑에 대하여 몇 가지 알 것이 있으니 첫째는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를 알 것이라. 혹 회당에 다니며 학습과 세례까지 받았다는 말을 들어도 분명치 아니하니 혹 세례를 받았으나 책벌 당한 자도 있고 학습했다 하나 열심 없이 다니는 이도 있어 믿는 여자에게 장가 들기를 원하여 교회에 다니는 이도 있으니 (중략) 그러므로 먼저 시집가고자 하는 것보다 자세히 살펴봄이 요긴한 것인즉 혼인에 상관되는 여자는 신랑 되고자 하는 사람의 형편을 잘 살필 것이요. 또 신부될 사람이 이런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위태하니 충성한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 그러나 친히 살펴보는 기회를 얻는 것은 더욱 합당한 것이다. 둘째는 성품을 알아야 할 것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과 신랑 될 사람의 성품이 같은지 알기 전에 어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중략) 셋째는 의식주 하게 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이니 사람이 자기 일가를 돌아보지 않고 더욱 자기 집안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악하다 하였으니(딤펴전 5:8) 만일 남편이 아내를 못

91) 노세영, 『교인의 혼례론』, 12~19.

먹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합당하거니와 어찌 사업이 없는 자가 아내까지 먹일 수 있겠는가?(중략) 기자의 경험대로 생각한 즉 총각이 18세 될 때까지 기다리면 걱정된다고 말하는 부모와 증매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8세 이상 되면 장가 보내지 못할까 보다 하는 이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짐작에 병신인가보다 하는 감정을 얻을까 겁내는 사람도 있으니 만일 아들이 7계명을 범할까 염려하여 장가보낸다 하면 더 말할 것 없으나 특별히 공부하려면 졸업하기 전에 장가감이 옳지 아니하니 가령 장가가서 공부하는 중에 아내나 자식이나 병나면 보아줄 수밖에 없으니 매우 방해가 되는 것인즉 졸업하고 좋은 사업을 얻어 세상살이에 요족한 후에 장가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지내보니 아직 옛 풍속을 좇는 힘이 많은 듯하다. 기자의 집에 7~8년 있었던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얼마큼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장가보내지 말라고 부탁하였더니 18세까지는 기다렸으나 아직 키가 작고 몸도 약한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서간도로 이사하였다가 왔기로 지금 아이를 장가보냈는가 물으니 조선풍속을 어기지 못하였다고 부끄러운 낯으로 대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혹 18세가 되었으나 몸이나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으니 18세로만 표준할 것이 아니라 장성하기를 기다려 혼인함이 필요할 줄 아니이나, 그런즉 이러한 혼인 풍속을 개량할 이는 누구입니까 선교사는 성경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으나 재미있게 되려면 먼저 목사나 조사나 장로들이 친히 입으로, 모본으로 가르침이 좋을 것이나 아직 직분자 가운데도 고치지 못하는 이가 있어 누가 핑계로 많은 직분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으로 본을 삼기 쉬우니 많은 사람 가운데 잘하는 사람으로 본을 삼는 것이 좋은 즉 만일 교인들이 좋은 풍속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하리오. 우리가 첫째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며 먼저 잘하는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sup>92)</sup>

로스의 『교인의 혼례론』은 그의 20여 년 동안의 조선선교 경험이 녹아

92) 위의 책, 20~24.

져 있는 것이다. 특히 혼인을 위한 사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는 근대전환기의 특수한 결혼 사례로 등장한다. 1910년부터 1924년 10월까지 사탕수수 재배회사와 미국 이민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사진 결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사진만 보고 결혼한 늙은 남편과의 소통도 문제였고 부족한 탁아시설도 의료혜택도 문제였다.<sup>93)</sup> 이 책이 출판된 때에는 아직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로스는 혼인은 육신만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중매가 강권에 따라, 혹은 사진만 보고 혼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혼인 풍속을 개량 할 이는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교인들이 앞장서 혼례에 대한 구습을 개량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혼인론, 부부윤리가 단순히 이식, 수용을 넘어서 토착화에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IV. 나오는 말

버트란트 러셀은 『결혼과 도덕(Marriage & Moral)』에서 왜 새로운 결혼과 도덕이 필요한가?<sup>94)</sup>라고 화두를 던진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물음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 답의 실마리를 근대전환기 기독교윤리의 한 유형인 “혼인론”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우선 전통사회의 혼례와 혼인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근대전환기의 새로운 혼례와 혼인론에서 새로운 결혼과 도덕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흐름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전통의

93) 박혜인,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 170-172.

94) 버트란트 러셀, 『결혼과 도덕(Marriage & Moral)』, 이순희 옮김, (서울: 사회평론, 2016), 6.

의례와 도덕과 충돌하고 수용하고 변용해나가는 모습이 오늘 기독교의 의례 특히 혼례, 혼인론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마펫의 『혼례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박보영이 주목하는 것처럼 근대전환기 한국의 혼례는 근대화의 논리와 기독교의 영향과 식민지 정책이라는 세 가지 중첩된 압박 속에서 전통의 혼례에서 비판받던 부분을 개량하고 선택적으로 서양의 요소를 수용하여 혼합의례의 성격이 되었다.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혼인동의를 위한 침묵과 언어의 충돌, 서양 혼내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동의를 위한 교회언어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마펫의 『혼례서』이다. 이 모습에서 기독교 혼인론의 이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14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한승곤은 『혼인론』을 편집하여 발간하면서 기독교와 서양사상이 유입되어 전통사회의 풍속과 충돌하면서 겪었던 문화적 갈등을 보여주었고, 단순히 서양 기독교의 혼인론을 이식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수용과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로스의 『교인의 혼례론』은 외래사상이 단순히 이식과 수용, 변용, 확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에 의한 토착화 시도를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외래사상과의 접변이 단순히 외래사상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고 메타모포시스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버트란트 러셀이 묻는 “왜 새로운 결혼과 도덕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기독교사회윤리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이다. 근대전환기 기독교인처럼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결혼과 도덕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식을 내놓을 수 있을까?

## 참고문헌

- 국가편찬위원회. 『유교적 사유와 삶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2009.
-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韓國思想史學』 20(2003), 35-82.
- 노세영(Rev. Cyril Ross). 『교인의 혼례론』. 경성: 조선예수교서회, 1922.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신유학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이훈상 옮김. 서울: 너머북스, 2013.
- 마췌. 『혼례서』, 미상, 미상.
- 박보영. “근대이행기 혼례의 변화-독일 선교사들의 보고에 나타난 침묵과 언어.”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2014), 189-271.
- 박지현. “알폰소 바노니(高一志)의 『서학제가』(서학제가) 「제부부」(제부부)권 선교의 한 방식으로서의 부부윤리.” 『인문논총』 67(2012), 511-550.
- 박혜미. “초기 기독교 자료 해제: 『혼인론』(1914)과 『교인의 혼례론』(1922).”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1(2019), 225-243.
- 버트란트 러셀, 『결혼과 도덕(Marriage & Moral)』, 이순희 옮김, 서울: 사회평론, 2016
- 배주연, “해제, 제가서학(齊家西學)”,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1, 경인문화사, 2020, 388-417
-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한국교회사학연구원.” 『教會史學』. 1(1)(2001), 117-147.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사람들의 혼인, 혼례, 결혼』.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75-96.
- 오지석. “해제-혼례서.”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 해제』.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236-237.
- 오지석. “근대전환기의 기독교 혼인윤리 성립과정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9

(2021), 337-369.

이배용 외. 『우리나라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1999.

이숙진.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박인덕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9 (2014), 345-375.

이숙진.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2010), 35-58.

이영수.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면모양상.” 『아시아문화연구』 28(2012), 151-184.

차옥승 편. 『기독교사 자료집 권1-타종교 및 전통문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서울: 고려한림원, 1993.

판토하 지음, 『칠극-마음을 다스리는 7가지 성찰』, 정민 옮김, 서울: 김영사, 202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연구회 엮음. 『〈신학월보〉 색인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1. 서울: 역사비평사, 1998.

한규무.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10(1999), 67-101.

한승곤 편. 『혼인론』, 평양: 광명서관, 예수교서원, 1904.

문일평. 「간편과 절약을 주안으로」. 『신동아』 1935.05, 84.

「대개는 형식에 불과한 소위 신식 결혼식」. 『동아일보』 1925년 11월 17일

「일제강점기 크리스찬의 결혼생활 지침서〈혼인론〉」. 『송대시보』 1134호, 2015년 2월 9일자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9> 2022.07.14. 15:35 접속.

<https://blog.daum.net/jidam55/16144914>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8%BC%EC%9D%B8> 2022.7.14,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8%BC%EB%A1%80> 2022.7.14,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

Keyword=%EA%B2%B0%ED%98%BC 2022. 7.14 접속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452> 2022년 7월 14일 20:10접속

논문투고일: 2022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 국 문 초 록 •

---

이 연구의 목적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 혼인론” 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전통사회의 혼인론과 가톨릭·개신교의 혼인론 사이의 같음과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혼인관 형성에 있어서 외래사상의 영향사적 궤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근대전환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은 조선의 문명개화를 자신들에게 부여된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구문명의 관점에서 청교도적 태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삶의 질서, 사회적 원리의 도입을 통해 조선을 문명개화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예로 ‘혼인론’에 대한 내한 선교사들의 저작들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근대전환기 한국사회에 기독교 ‘혼인론’에서 나타난 문화의 접변, 혼종 그리고 토착화 과정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인론에 담겨진 근대 한국의 풍경의 모습과 외래 사상의 이식, 수용, 변용, 확장 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였다.

주제어: 혼인론, 기독교윤리, 근대전환기, 기독교인의 결혼, 혼인윤리

---